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177
------	------

발의일자 : 2021. 12. 23.

발 의 자 : 윤영희, 김경완

강수정, 조윤형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되어 회의 규칙을 인용하는 2건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12. 23. ~ 12. 28.

라. 기 타

1) 일부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제1조(「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회의규칙」 제68조”를 “「회의규칙」 제81조”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으로, “서명날인하여”를 “서명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을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본의의”를 “본회의”로, “「회의규칙」 제44조의 제1항”을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으로, “「회의규칙」 제58조의 제1항”을 “「회의규칙」 제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을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을 각각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7조제4항”을 “제54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회의규칙」 제46조”를 “「회의규칙」 제5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을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규칙」 제68조의--	제1조 (목적) ----- ----- ---- 「회의규칙」 제81조--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2. 3. (생략) 4. "전자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거 5. 6.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 서명하여 ----- ----- 2. 3. (현행과 같음) 4. -----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 ----- 5. 6. (현행과 같음)
제3조(회의록) ①본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4조의 제1항을, 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	제3조(회의록) ①본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을, 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규

규칙」 제58조의 제1항을 -----.

② (생략)

제4조(전자임시회의록) ①전자임시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②·③ (생략)

제5조(보존회의록) ①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

②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제6조(비공개회의록) ① (생략)

②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규칙」 제47조제4항의 --

제9조(자구의 정정) ①의장은 발언한 의원, 금천구청장 및 기타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

②·③ (생략)

칙」 제70조제1항을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자임시회의록) ①-----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존회의록) ①-----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

②-----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

제6조(비공개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규칙」 제54조제4항의 --

제9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

②·③ (현행과 같음)

<p>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 복사)</p> <p>① (생 략)</p> <p>②의원이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p>	<p>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 복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 ----- -----</p>
--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